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09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근로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정희용의원안)	2

I. 개요

1.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2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4.
- (3) 회 부 일 : 2026. 3.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정회용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공제(제47조) ☐ 구간별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 구간별 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th>공제액</th></tr> </thead> <tbody> <tr> <td>~500만</td><td>총 급여액의 <u>70%</u></td></tr> <tr> <td>500만~1,500만</td><td><u>350만원</u>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td></tr> <tr> <td>1,500만~4,500만</td><td><u>750만원</u>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td></tr> <tr> <td>4,500만~1억</td><td><u>1,200만원</u>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td></tr> <tr> <td>1억~</td><td><u>1,475만원</u> + (1억원 초과 금액의 2%)</td></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	총 급여액의 <u>70%</u>	500만~1,500만	<u>350만원</u>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4,500만	<u>750만원</u>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1억	<u>1,200만원</u>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	<u>1,475만원</u> + (1억원 초과 금액의 2%)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th>공제액</th></tr> </thead> <tbody> <tr> <td>~500만</td><td>총 급여액의 <u>80%</u></td></tr> <tr> <td>500만~1,500만</td><td><u>450만원</u>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td></tr> <tr> <td>1,500만~4,500만</td><td><u>850만원</u>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td></tr> <tr> <td>4,500만~1억</td><td><u>1,300만원</u>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td></tr> <tr> <td>1억~</td><td><u>1,575만원</u> + (1억원 초과 금액의 2%)</td></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	총 급여액의 <u>80%</u>	500만~1,500만	<u>450만원</u>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4,500만	<u>850만원</u>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1억	<u>1,300만원</u>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	<u>1,575만원</u> + (1억원 초과 금액의 2%)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	총 급여액의 <u>70%</u>																								
500만~1,500만	<u>350만원</u>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4,500만	<u>750만원</u>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1억	<u>1,200만원</u>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	<u>1,475만원</u> + (1억원 초과 금액의 2%)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	총 급여액의 <u>80%</u>																								
500만~1,500만	<u>450만원</u>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1,500만~4,500만	<u>850만원</u>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4,500만~1억	<u>1,300만원</u>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1억~	<u>1,575만원</u> + (1억원 초과 금액의 2%)																								
☐ 소득공제 한도: <u>2천만원</u>	☐ 소득공제 한도: <u>3천만원</u> ☐ 시행일: 2027.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정회용의원안 2026. 3. 4. 발의(의안번호 17209)

☐ 개정안은 ① 근로소득공제율과 ②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① 현행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 70%를 80%로 상향하고, ②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의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근로소득 창출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함과 아울러 사업소득자에 비해 소득과약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과세형평을 도모¹⁾하려는 것임.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그 급여액 수준별로 최소 2%에서 최대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개산공제 방식²⁾으로 이루어지며, 기존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가 없었으나, 2019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가 2천만원으로 설정되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시켜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구간에 한하여 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시키도록 하고 있는 바, 저소득 근로소

1) 안중석·오종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공제 규모는 주요국의 유사한 공제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편인데, 이는 사업소득의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하다는 전제 하에 근로소득공제 규모를 실제 필요경비보다 크게 설정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간 실효세율 격차를 유도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임.(안중석·오종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pp. 70~74.)

2)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 창출에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시 경비지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개산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음.

득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조세부담 증가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소득세 체계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부 계층에 대해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조세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 구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았음에도 명목소득만 상승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가 더 높은 낮은 소득공제율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평균세율·한계세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³⁾.

특히 2013년 대비 2025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이 25.4%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근로자의 실질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조세부담 증가 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Bracket Creep효과.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4년	2025년
소비자 물가지수	93.0	94.9	97.6	99.5	102.5	114.2	116.6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100 기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총급여액이 3억 6,250만원⁴⁾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근로소득공제 한도인 2천만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3억 6,25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로, 2024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총 근로소득자 중 0.24%에 불과⁵⁾함.

개정안과 같이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이와 같이 총급여액이 높은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써, 그 세제지원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되므로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4) 1,475만원 + (3억 6,250만원-1억원) × 2% = 2,000만원

5) 2024년 귀속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는 2,107만 8,535명이며, 총 급여액이 3억 6,250만원 이상인 사람은 50,517명임

둘째, 개정안과 같이 근로소득공제율 및 한도를 상향하는 경우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을 높여 소득세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 비율은 2024년 기준 32.5%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액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면세자가 다시 증가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의 원칙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단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	46.8	43.6	41.0	38.9	36.8	37.2	35.3	33.6	33.0	32.5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셋째, 저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미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⁶⁾⁷⁾ 등이 시행 중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⁸⁾이 제기될 수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희용의원안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할

6)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8) 재정경제부 의견임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조 9,419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4조 693억원(연평균 2조 8,1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정희용의원안	△19,419	△33,443	△28,092	△29,261	△30,478	△140,693	△28,1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